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제73호
제 출 자	정기혁 의원 외 6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유 천 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의장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5조(특별휴가)제10항

-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¹⁾, 지방공무원복무규정²⁾, 지방자치법³⁾

- 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결정 사항을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결정 사항을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